

**'토사유출 하천오염 처벌'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권혁용 hykwon@cnews.co.kr 2013-08-02 08:47:54

강원소재 삼흥 위헌결정 이끌어내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한 자를 처벌토록 규정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 제78조 제4호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수질보전법 제78조 4호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도 처벌하는 같은 법 81조 중 제78조 4호 부분은 책임주의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번 위헌결정은 강원소재 삼흥(대표 서현길)이 지난 2010년 4월 강원 홍천 주음치 도로현장에서 수질보전법위반으로 춘천지법에 약식기소됨에 따라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면서 이뤄졌다.

헌법재판소는 벌칙규정이나 관련법령 어디에도 토사의 의미나 다량의 정도, 현저히 오염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기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감독 행정관청이나 법관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벌칙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양벌규정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해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해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위헌결정으로 수질보전법 제78조 제4호와 관련된 심판대상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으며 그동안 이 규정으로 인해 받은 유죄확정판결들도 재심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혁용기자 hykwon@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 헌재 "공공수역 토사 다량유출시 처벌 규정 위헌"

기사입력 2013.08.02 14:17:28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수질보전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춘천지법과 의정부지법이 제청한 수질보전법 제78조 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수질보전법 제78조 4항은 강이나 호수 등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오염시킨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어느 정도의 양을 `다량`으로 볼 것인지, `현저한 오염`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서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판시했다.

A사는 지난 2010년 강원도 홍천군에서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다 토사가 유출돼 인근하천을 오염시켰다. 감독관청은 A사를 고발했고 검찰은 수질보전법 위반 혐의로 A사를 약식재판에 넘겼다. 이에 A사는 해당 처벌조항이 위헌이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관할 춘천지법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헌재 “수질보전법 토사유출 처벌조항...위반 기준 모호해 위헌”

2013-08-02 11:27:12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수질보전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춘천지법과 의정부지법이 제정한 수질보전법 제78조 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수질보전법 제78조 4항은 강이나 호수 등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오염시킨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어느 정도의 양을 '다량'으로 볼 것인지, '현저한 오염'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서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수질보전법은 물론 하위법령 어디에도 세부기준이 없고 검찰의 내부판단 기준이나 법원의 확립된 판례도 없어"며 "범죄의 성립여부가 법관의 자의적 해석에 맡겨진다"며 위헌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A사는 지난 2010년 강원도 홍천군에서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다 토사가 유출돼 인근하천을 오염시켰다. 감독관청은 A사를 고발했고 검찰은 수질보전법 위반 혐의로 A사를 약식재판에 넘겼다. 이에 A사는 해당 처벌조항이 위헌이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관할 춘천지법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지역냉난방 시설공사를 하던 J씨도 공사도중 다량의 토사를 인근하천으로 유출했다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J씨도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관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수질보전법의 양벌규정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양벌규정이란 종업원의 불법행위가 적발·처벌될 경우 다른 범죄혐의가 없어도 법인이나 회사 대표까지 함께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최근 수년 동안 양벌규정이 있는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오고 있다.

hankooki.com

한국일보



[ 한국일보 2013.8.2 기사 ]

**'토사 버려 수질 오염' 규정은 위헌**

헌재 판결 "기준 애매모호"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버려 수질을 현저히 오염시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수질보전법 규정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춘천지법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토사를 다량으로 유출해 수질을 현저히 오염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4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등을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규정은 어느 정도의 양을 다량으로 보고 어떤 경우 현저히 오염됐다고 볼 것인지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질보전법이나 하위법령 어디에도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검찰청 내부 판단 기준이나 법원의 확립된 판례도 없어 같은 행위를 두고도 단속 공무원이나 법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인터넷한국일보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

강원일보(<http://www.kwnews.co.kr>) 2013년 8월 2일 기사입니다.

## '종업원 위법행위 법인도 처벌' 위헌 판결 얻어내



<b>춘천 건설업체 (주)삼흥  
양벌규정 문제점 제기</b>

춘천의 건설업체 (주)삼흥이 양벌규정 관련,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으며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흥은 2010년 4월께 홍천 주음치 도로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유출과 관련, 수질보전법 위반으로 양벌규정이 적용돼 춘천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됐다.

당시 삼흥의 토목부 과장 A씨가 공사를 시행하며 수질보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는 물론 삼흥도 약식명령을 받았다. 양벌규정은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나 삼흥은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신청해 지난달 25일 위헌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결정 요약문에서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을 현저히 오염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인도 처벌하는 것도 책임주의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주)삼흥 서현길 대표(사진)는 “그동안 많은 건설업체가 양벌규정에 따라 행정적 벌점 및 벌금을 부과받았다”며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유죄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가 가능해져 행정적 벌점 규제자와 벌금 부과자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